#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0

환 경 부

법제처 심사 전

#### 1. 개정이유

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000호, 2020. 3. 31. 공포, 2020. 10. 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보완점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과태료 부과기준(안 별표 2 개정)

도급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.

#### 나.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추가(안 제3조제2항제1호 개정)

화학물질관리위원회 논의 시 중소기업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## 환경부령 제 호

#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"행정안전부·산업통상자원부·환경부 및 고용노동부"를 "행정안전부·산업통상자원부·환경부·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"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12호 중 "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)신고"를 "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신고 또는 변경신고"로 한다.

제23조의2 중 "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"를 "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"로 한다.

별표 2 제2호차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파목 위반행위란 중 "법 제31조를"을 "법 제31조제1항 전단을"로 하고, 같은 호 하목부터 버목까지를 거목부터 서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하.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	법 제64조	180	240	300
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제2항제2호			

# 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	제3조(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
의사항 등) ① (생 략)	의사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	②
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	
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
1. <u>행정안전부·산업통상자원부</u>	1. <u>행정안전부·산업통상자원부</u>
•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	·환경부·고용노동부 및 중
공무원	<u>소벤처기업부</u>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	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	②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	
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	
장(이하 "지방환경관서의 장"이	
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	
1. ~ 11의2. (생 략)	1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
12.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	12
물질 취급의 <u>도급(하도급을</u>	<u>도급(하도급을</u>
<u>포함한다)신고</u> 수리 등	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
	<u>다)신고 또는 변경신고</u>

### 13. ~ 25. (생 략)

③ • ④ (생 략)

제23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환경부장관(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,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3. ~ 25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23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「개인정보 보호법
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
또는 제4호